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현행 규칙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 상담소 등 외부기관에 대한 위탁비용 지급 기한이 없는바, 위탁비용 지급 기한을 신설하여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회계관계공무원이 외부기관에 대한 위탁비용 입금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 지연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속한 비용의 지급을 독려함

3. 주요내용

-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바로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신설)
-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담임자로부터 지급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하도록 함(안 제30조제5항 신설)

-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담임자로부터 지급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지연 내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4.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바로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한다.
- ⑥ 제5항의 기간 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수탁기관의 기관명, 위탁종료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위탁비용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사무관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지급의
퇴를 하였으나 아직 회계관계공무원이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의퇴를 받은 비용을 입금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 - 1609